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자동차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39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2. 21. 시행)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와 관련된 권한의 위임규정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8제1항제3호 중 “부착, 봉인”을 “부착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4호 중 “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등록번호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제2호가목 3)의 위반행위란 중 “발급 또는 봉인”을 “발급”으로 하고, 나목 14)의 위반행위란 중 “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”를 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”를 “부착을 다시 신청하지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부착 또는 봉인하지”를 “부착하지”로 하고,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 중 “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”를 “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(생 략) 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생 략) ③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등록번호판 및 봉인</u>을 폐는 허가 5.·6. (생 략) 7. 법 제13조 (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<u>자동차 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</u>의 수납·영치 및 폐기 8. ~ 35. (생 략) ④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 <u>등록번호판</u>----- ----- 5.·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----- <u>자동차</u> <u>등록증 및 등록번호판</u>----- ----- 8. ~ 3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60